

##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31
----------	-----------

제출일자	2007. 9. 18.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거창박물관에 입장할 때 관람료를 받고 있으나 연간수입이 소액이어서 관람권 인쇄비 등 징수비용을 제하고 나면 세입효과가 매우 낮으므로, 박물관의 사회 교육적 측면을 높일 수 있도록 무료화 하여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공간으로 개방하고,
-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거창박물관조례”로 변경함.
- 나. 목적을 개정된 조례에 맞게 새로이 규정함(안 제1조).
- 다.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  
(용어의 정의, 관람절차, 관람료 징수방법, 관람료 면제조항 등)
- 라. 박물관의 업무를 현실에 맞게 규정함(안 제5조).
- 마. 명예관장 제도를 없애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 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위원은 박물관담당 부서장과 박물관운영에 식견 있는 학계, 문화·예술계, 지역인사 중 군수가 위촉,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함
- 바. 박물관자료의 취득, 구입,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제8조, 제9조)
- 사. 관람자의 행위제한, 입장제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안 제10,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제12조, 제25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6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그 밖에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입법예고(2007. 7. 31. ~ 8. 25.)결과 : 의견 없음.

##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박물관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거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거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16-5번지에 둔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진열품을 공개한다.

1. 1월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

②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박물관 게시판, 군청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5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서 규정

- 하는 “박물관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전시 및 연구
2. 향토사 및 지역 문화유산의 발굴 · 조사 · 연구
  3. 박물관자료와 관련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공무원) 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박물관자료의 취득) 박물관자료는 수집, 구입, 기증, 기탁, 관리전환에 의하여 취득한다.

제8조(박물관자료의 구입) 군수는 전시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감정을 받아 구입한다.

제9조(박물관자료의 기증 및 기탁) ①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전시,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②군수는 박물관자료의 확보를 위해 유물 등을 기탁 받을 수 있다.

제10조(행위의 제한) ①박물관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없이 진열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2.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소란 행위
4.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박물관 근무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 거절 및 퇴관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정신이상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4.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6.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2조(변상)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박물관자료, 관람시설, 물품 등을 손상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박물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박물관을 관장하는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③위원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식견이 있는 학계, 문화·예술계, 지역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위원회의 간사는 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연구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 ⑧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박물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